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3. 30.(수)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산업국 은행과	책임자	과 장 김연준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 김기훈 (02-2100-2953)

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

주요 내용

□ 3월 30일,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「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」을 논의하였습니다.

○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*을 점검하고, 이 중 유연화 기간이 3월말 종료되는 7개 조치의 향후 처리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.

* 17개는 조치완료(13개) 및 정상화(4개), 8개는 '22.3월말(7개), 6월말(1개) 기한 도래

➔ 검토 결과,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하여 **3개월 유예 기간(공통)**을 부여하되,

유연화 조치 종료시 ①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는 **단계적 정상화***, ②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(6개)는 3개월 유예 후 **즉시 정상화**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* 3개월 유예 이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(상세 본문)

1 추진 경과 및 성과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`20.4월부터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」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.

○ 금융위원회는 그간 총 4차에 걸쳐(1차 `20.4.16, 2차 `20.8.26, 3차 `21.3.8, 4차 `21.9.29) 규제 유연화 방안*을 보고·의결하였습니다.

* 금융업권별 (i)자본 규제, (ii)유동성 규제, (iii)영업 규제 등 총 25개 조치(참고)

-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①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·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,

<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 ('20.4월~'21.12월) >

구 분	만기연장 ^{일시상환}	원금 상환유예 ^{분할상환}	이자 상환유예 ^{일시+분할상환}
은 행	166.5조원(69.1만건)	11.1조원(3.1만건)	891억원(0.7만건)
제2금융권	102.5조원(33.1만건)	2.4조원(2.0만건)	785억원(0.6만건)
정책금융기관	1.0조원(0.6만건)	0.7조원(3.9만건)	725억원(0.4만건)
합 계	270.0조원(102.9만건)	14.3조원(9.1만건)	2,400억(1.7만건)

- ②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·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.

<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 증가 추이 >

(단위 : 조원)

구 분	'18년말	'19년말(A)	'20.6말	'20년말	'21.6말	'21.12말(B)	증가액(B-A)
은 행	857.7	906.5	987.8	1,020.5	1,066.8	1,113.6	207.1
보 험 사	101.2	113.0	120.6	129.7	133.5	137.4	24.4
저축은행	34.1	37.2	39.2	43.2	48.9	58.9	21.7
여 전 사	43.1	51.1	53.1	57.4	65.7	72.4	21.3
상호금융	95.4	113.8	130.2	145.8	163.8	183.7	69.9
합 계	1,131.5	1,221.6	1,330.9	1,396.6	1,478.7	1,566.0	344.4

2 단계적 정상화 필요성 및 세부방안

- 금융위원회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모 증가*, 잠재부실 대비**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.

* (총신용 증가율, YoY) '19.6월: 6.3% → '20.6월: 8.0% → '21.6월: 9.8%

** BCBS 등 해외 감독당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 및 부도율 등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속 경고

-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, 규제자본 추가 적립, 규제 정상화*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.

* FSB 권고('20.3월) 등에 따라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였던 해외 주요국도 최근 Pandexit 기조 등에 따라 대부분 조치를 정상화하는 중

※ '21.9.29일 4차 유연화 방안 결정시(보도자료) '22.3월 이후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

- 다만, ①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(~ '22.9월말)되었으며, ②일부 규제는 즉시 정상화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⇒ 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(공통)을 부여하되, ①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, ②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① (단계적 정상화)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* 및 채권 시장 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, 3개월 유예(~ '22.6월)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.

* '21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.1%로 4개 은행이 완화된 규제비율(85%) 준수중

<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 >

	~'22.6월	7~9월	10~12월	'23.1~3월	4~6월	7월~
규제비율	85% (-)	90% (+5%p)	92.5% (+2.5%p)	95% (+2.5%p)	97.5% (+2.5%p)	100% (+2.5%p)

- ② (즉시 정상화) 은행 외화LCR·예대율,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*의 경우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, 공통 유예기간(3개월) 이후 즉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.

* 대부분 금융회사가 유연화 조치 이전 본래 규제비율을 준수중

< 만기연장·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 처리방안 >

- ① 은행 통합 LCR 완화* : '22.3월말 → '22.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
* 통합 LCR 규제비율을 100%→85%로 인하
- ② 은행 외화 LCR 완화* : '22.3월말 → '22.6월말(종료)
* 외화 LCR 규제비율을 80%→70%로 인하
- ③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: '22.3월말 → '22.6월말(종료)
* 예대율(100%) 5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- ④ 저축은행·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* : '22.3월말 → '22.6월말(종료)
* 유동성비율(100%) 10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- ⑤ 저축은행·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* : '22.3월말 → '22.6월말(종료)
* 예대율(저축은행 100%, 상호금융 80~100%) 10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- ⑥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* : '22.3월말 → '22.6월말(종료)
* 의무여신비율(30~50%) 5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- ⑦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* : '21.12월 평가 → '22.3월 평가(종료)
*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지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

3 향후 계획

-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.
- 한편, 유연화 기간이 '22.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'순안정자금조달비율* 적용 유예 조치' 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.

* NSFR(Net Stable Funding Ratio) : 안정자금가용금액 /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$\geq 100\%$ $\rightarrow 80\%$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김연준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훈 (02-2100-2953)
<공동>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이동엽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찬 (02-2100-2964)
<공동>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진수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고선영 (02-2100-2991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변제호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문 (02-2100-2824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	고상범 (02-2100-2850)
		담당자	사무관	최원욱 (02-2100-2855)
<공동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석란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오승준 (02-2100-2863)
<공동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	이수영 (02-2100-2650)
		담당자	사무관	장원석 (02-2100-2654)
<공동>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책임자	국 장	김병철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곽범준 (02-3145-8001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강선남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황준하 (02-3145-8050)
<공동>	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	책임자	국 장	박충현 (02-3145-8370)
		담당자	팀 장	이종오 (02-3145-8380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	책임자	실 장	임종건 (02-3145-8350)
		담당자	팀 장	황태식 (02-3145-8360)

<공동>	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	책임자	실 장 김재호 (02-3145-8200)
		담당자	팀 장 김우현 (02-3145-8210)
<공동>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 양해환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 이권홍 (02-3145-7455)
<공동>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 김준환 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 이성희 (02-3145-7552)
<공동>	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 정용걸 (02-3145-6770)
		담당자	팀 장 문재희 (02-3145-6773)
<공동>	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	책임자	국 장 권화종 (02-3145-8070)
		담당자	팀 장 이건필 (02-3145-8083)
<공동>	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	책임자	국 장 엄일용 (02-3145-7920)
		담당자	팀 장 곽원섭 (02-3145-7928)
<공동>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국 장 이주현 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 유석호 (02-3145-7595)

참고

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업권	세부방안	추진 현황	향후 계획
가. 자본 적정성 규제			
공통	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	· 자본비율 산출시 은행·보험사·증권사 출자금에 적용되는 위험값 하향조정	조치 완료
은행	「바젤Ⅲ 최종안」 조기 시행	· '20.2분기부터 시행	조치 완료
은행	D-SIB에서 소규모지방은행 제외	· '21년도 D-SIB선정시 소규모 지방은행(제주은행) 제외	조치 완료
은행	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연기	· 시행시기를 '21년 이후로 연기	조치 완료
증권	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	· '20년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(0~32% → 0~16%)	기 정상화
	증권사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	· '20년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(100% → 0~32%)	기 정상화
	증권사 증기대출 위험값 하향조정	· (영구적으로) 중소벤처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값 하향 조정	조치 완료
지주	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	· '21.9월말까지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확대	기 정상화
나. 유동성 규제			
은행	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	· '22.3월말까지 100% → 85%	'22.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
	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	· '22.3월말까지 80% → 70%	'22.6월말 종료
은행	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2.3월말까지 5%p 완화(100→105%)	'22.6월말 종료
은행	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	· '21년말까지 신규 대출 가중치 하향 조정(100 → 85%)	기 정상화
산은	NSFR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2.6월말까지 20%p 완화(100→80%)	추후 검토
보험	채안·증안펀드 출자목적 RP 허용	· 법령해석 발급	조치 완료
보험	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	· '21.12월말 기준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 ('22.3월말) 시까지 반영	'22.6월말 종료
여전저축	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2.3월말까지 10%p 완화(100→90%)	'22.6월말 종료
저축상호	예대율(80~110%)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2.3월말까지 10%p 완화	'22.6월말 종료
다. 자산 건전성 규제			
공통	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	· 법령해석* 안내 공문 발송 * ①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유지 가능 ② 이자수익 인식 가능	조치 완료
여전	폐업 사업자 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	·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'요주의' 이상 분류 허용	조치 완료
라. 면책 등			
공통	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강화	· 검사·제재 규정 및 세칙 개정	조치 완료
공통	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	· 비조치의견서 발급	조치 완료
보험	보험 대면채널에 TM절차 허용	· 대면채널의 설명의무 이행 및 자필 서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 허용	조치 완료
여전	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	· 레버리지 한도 확대(자/자본 비 6배~8배)	조치 완료
저축	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(30~50%)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2.3월말까지 5%p 완화	'22.6월말 종료
정책금융	적극 위기대응 인센티브 부여	· '20년 금융공공기관 평가시 수익성 지표 등 제외, 공급실적 우선 평가	조치 완료